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2.13. 공포, 2025. 2.14. 시행)에 맞추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5호, 2024.2.13. 공포, 2025.2.14.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실시 시기와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에 따른 지표조사 관련사항 정비

- 지표조사 실시시기 삭제(안 제3조 및 <별표1> 삭제)
- 국가·지자체 지표조사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방안 마련(안 제5조제1항)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삭제)
-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 삭제, 안 별지 제2호 및 제4호)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 신청대상자 제한 해제(안 제2조)
- 발굴조사 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본·시굴조사 완료신고 시 굴착사진 포함하여 제출토록 강화(안 제7조의2)
-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 연장(7일→30일)됨에 따른 발견신고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자는“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조치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트렌치 안전조치(굴착면 경사준수, 계단식 굴착 등) 사진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1호 중 “7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 보존조치 (☐ 현지보존 ☐ 이전보존)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내용	

보존 조치 유형	☐ 현상보존 ☐ 현지보존 ☐ 이전보존		
	상세 내용		

보존 조치 이행 결과	이행기간 ~		
	이행자(기관)		
	소요비용	보존(복원) 면적	
	이행 장소(주소)		
	이행 방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 보존조치(☐ 현지보존, ☐ 이전보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도서 2. 측량성과도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4. 향후 관리계획	수수료 없음
------	--	---------------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허가번호 제 - 호		매장유산명			
발굴조사 유형 [] 표본 [] 시굴 [] 정밀발굴		발굴 사유			
매장유산 소재지		매장유산 산포지(散布地) 면적 m ²		발굴면적 m ²	
발굴조사 기관명		조사단	조사단장		
발굴기간 ~			책임조사원		
현장조사일 일			조 사 원		
발굴 비용 원			준조사원		
			보 조 원		
출토유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출토유물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고자(신고자) 성명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3.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만 첨부하며, 조치 완료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4. 트렌치 안전조치(굴착면 경사준수, 계단식 굴착 등) 사진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생략)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u>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자는</u> ----- -----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u>≤삭제></u>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제5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 ----- ----- 「국가유

호와 같다.

1. 현상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
태대로 보존하는 것

3.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영 제4조
제2항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2
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
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
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
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
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유산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
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
여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

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조치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
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
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
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
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
공사의 시행자가 국가유산 보존
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현상보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
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
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삭 제>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참관조사 지역의 위치도·전경 사진과 참관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유산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나.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3.(생략)

<신설>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3. (현행과 같음)

4. 트렌치 안전조치(굴착면 경사준수, 계단식 굴착 등) 사진